#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66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진성준・유동수・김현정

송재봉 • 주철현 • 이학영

정을호 · 강훈식 · 정준호

김 윤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 개발사업이나 에너지 개발사업 등을 하는 경우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협의 중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보다 상위의 계획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주관 행정기관의 장(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과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계획의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을 말한다)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도 별도의 조정 절차 없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이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조 정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경우에도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내용을 대상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 실현에 보다 기여하고자 함(안 제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 법률 제 호

##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호 중 "제31조제2항"을 "제19조의2제2항·제31조제2항"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제2항을 삭제한다.

- 제19조의2(조정 요청)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 링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 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 그 해당 계획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제19조의2까지"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제19조까지의 규정을"을 "제19조의2까지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략환경영향평가의 조정 요청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조에 따라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환 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환	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① -
경부장관, 계획 수립기관의 장,	
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승인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승	
인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	
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	
향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하	
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제31조제2항</u> 에 따른 <u>환경영</u>	2. <u>제19조의2제2항·제31조제2</u>
<u>향평가</u> 협의 내용의 조정에	<u>항전략환경영향평가・</u>
관한 사항	<u>환경영향평가</u>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u>&lt;삭 제&gt;</u>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 정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신 설>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조정 요청)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협의 내용을 조정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주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의 조정을 요청하였을 때 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 기 전에 그 해당 계획에 대하 여 승인등을 하거나 확정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조정 요청에 필요한 사항은

제20조(재협의) ① 개발기본계획 지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협의한 개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② (생략)
- 제21조(변경협의) ①·② (생략)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 경협의에 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재협의) ①
제19조의2까
<u> </u>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변경협의) ①・② (현행과
같음)
3
제19조의2까지를